

「평창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

첨 토 보 고 서

1. 조례안 개요

- 제 안 자 : 이창열 의원
- 제안일자 : 2025. 9. 8.
- 회부일자 : 2025. 10. 13.
- 상정일자 : 2025. 10. 13.

2. 제안이유

- 결혼장려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결혼장려 사업을 지원하는데 필 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건강한 결혼문화 정착에 기여 함을 목적으로 함.

3. 주요내용

- 결혼장려 분위기 조성을 위한 사업추진(안 제6조의3제1항)
- 기관·단체 등 사무 위탁,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지원 사항
(안 제6조의3제2항)

4. 검토의견

가. 관련 근거

- 「지방자치법」 제13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주민의 복지 증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고, 제28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, 「건강가정기본법」 제8조에서 모든 국민은 혼인과 출산의 사회적 중요성을 인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.

나. 입법의 취지

- 지속적인 인구감소에 문제에 대응하고 지역 전반에 결혼 친화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결혼에 대한 긍정적 가치관을 고취하고자 함.

다. 조례안의 주요내용

- 안 제6조의3(결혼장려 분위기 조성 지원)에서 결혼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 및 시책 추진, 해당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위탁과 재정적 지원의 근거를 마련함.

5. 종합검토의견

- 본 개정조례안은 결혼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여 건전한 결혼문화 정착과 긍정적 가치관 확산을 제도적으로 지원함으로써, 궁극적으로 출산율 제고 및 인구문제 개선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서, 입법 취지는 타당하고 상위 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.

불임 관계 법령

□ 지방자치법

제13조(지방자치단체 사무 범위)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. 다만,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려하지 아니하다.

1. (생 략)
2. 주민의 복지증진
 - 가.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
 - 나. ~ 차. (생 략)
3. ~ 7. (생 략)

제28조(조례)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 할 수 있다. 다만,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 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.

□ 건강가정기본법

제8조(혼인과 출산) ① 모든 국민은 혼인과 출산의 사회적 중요성을 인식하여야 한다.